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3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서명옥 · 박상웅 · 박성훈
박충권 · 김정재 · 김기웅
나경원 · 박대출 · 이종배
성일종 · 배준영 · 권영세
서범수 · 추경호 · 이현승
김용태 · 최은석 · 구자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15
만 70세 이상	100분의 20

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0
15년 이상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1조의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에서 공제한다.</u> <u>1.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u>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th><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00분의 10</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00분의 15</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만 70세 이상</u></td><td style="text-align: center;"><u>100분의 20</u></td></tr> </tbody> </table> <u>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u>	연령	공제율	<u>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u>	<u>100분의 10</u>	<u>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u>	<u>100분의 15</u>	<u>만 70세 이상</u>	<u>100분의 20</u>
연령	공제율								
<u>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u>	<u>100분의 10</u>								
<u>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u>	<u>100분의 15</u>								
<u>만 70세 이상</u>	<u>100분의 20</u>								

	<u>보유기간</u>	<u>공제율</u>
	<u>5년 이상 10년 미만</u>	<u>100분의 10</u>
	<u>10년 이상 15년 미만</u>	<u>100분의 20</u>
	<u>15년 이상</u>	<u>100분의 25</u>